
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운영지침

2021. 4.



과학기술정보통신부



data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

목 차

I. 총칙	1
II. 공급기업 지정 및 운영	4
III. 데이터바우처 신청·선정·협약	10
IV. 데이터바우처 사업 수행·관리	14
V. 기타사항	21

1. 사업목적 및 내용

- 본 운영 지침은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제반 사항을 정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기술한다.
-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은 중소기업, 소상공인, 예비창업자 등 데이터 활용이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바우처 형식의 데이터 구매·가공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.

2. 용어의 정리

- 「데이터바우처」는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데이터 구매, 가공 서비스를 쿠폰 형식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.
- 「전담기관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의 운영기관으로 지정한 기관(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)을 말한다.
- 「전문기관」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 협의를 통해 추천된 전문분야별 공공기관 또는 협·단체로,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추진에 협력하는 기관을 말한다.
- 「데이터 공급기업(이하 ‘공급기업’)」은 데이터바우처를 통해 데이터 수요기업에 데이터를 판매할 수 있도록 전담기관으로부터 지정된 데이터 판매기업 또는 가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 가공기업을 말한다.
- 「데이터 판매기업(이하 ‘판매기업’)」은 판매 또는 처분이 가능한 정당한 권원을 가진 데이터 상품을 자체 보유하고 전담기관으로부터 데이터바우처를 통해 데이터 상품을 유통할 수 있도록 지정 받은 기업을 말한다.

- 「데이터 가공기업(이하 ‘가공기업’)」은 데이터 가공서비스 수행 역량을 보유한 기업으로써 전담기관으로부터 데이터바우처를 통해 데이터 가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정받은 기업을 말한다.
- 「데이터 수요기업(이하 ‘수요기업’)」은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데이터 구매 또는 가공서비스를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하도록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.
- 「구매 바우처」는 수요기업이 데이터 판매기업으로부터 데이터 상품을 제공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말한다.
- 「가공 바우처」는 수요기업이 데이터 가공기업으로부터 데이터 가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말한다.
- 「운영조정위원회」는 사업의 정책적 방향 제시와 운영상 주요 사안의 결정을 위해 데이터산업 분야의 기술, 산업, 정책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.
- 「평가위원회」는 공급기업 지정, 수요기업 선정평가, 수요기업 사업 결과 평가 등의 각종 평가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.
- 「심의위원회」는 선정평가 후 부문별 지원금 조정 심의, 사업관련 이의신청 검토, 협약내용 변경, 제재 수준 의결 등의 사업추진 과정의 조정·의사결정 사항 의결을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.
- 「규정위원회」는 사업관련 법률자문 및 규정 등의 검토를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.
- 「부정심의위원회」는 수요기업 또는 공급기업의 부정행위 등 보조금법 및 관련법령에 따른 위반 사안의 조사 및 처리에 대한 의결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.
- 「사업관리시스템」(PMS)은 데이터바우처 수요·공급기업 신청 및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전반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.

3. 추진체계 및 역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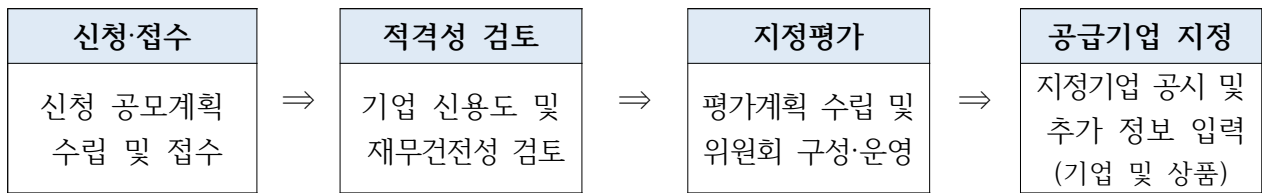
- (주무부처 - 과학기술정보통신부) 사업 기본계획 수립
- (전담기관 -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) 데이터바우처 사업 전담 및 수행, 데이터 판매·가공기업 심사·지정, 수요기업 선정, 사업 홍보 등
- (전문기관) 분야별 수요 발굴, 분야 바우처 신청·접수, 수요기업 사전심사, 선정평가 협력, 사업관리 및 후속지원 협력
- (수요기업) 중소기업, 소상공인, 1인창조기업, 예비창업자로 사업 추진을 위해 데이터 활용을 희망하는 기업
- (공급기업) 수요기업이 희망하는 데이터 상품, 데이터 가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

II 공급기업 지정 및 운영

1. 공급기업의 역할

- 공급기업은 전담기관이 공고한 일정한 절차를 통해 데이터바우처 수요기업에 데이터 판매 또는 가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.

[표1] 데이터바우처 공급기업 지정 절차



- 공급기업은 수요기업이 원하는 데이터 상품 또는 가공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요기업에 데이터 상품 또는 가공서비스의 충분한 설명 및 가격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
- 공급기업은 데이터바우처 공모기간 중 데이터 활용을 희망하는 수요기업의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데이터 상품 또는 가공서비스의 구체적인 제공 계획을 제시하고 관련 계획을 포함한 '사전협의서'와 '표준견적서'를 작성하여 수요기업이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- 공급기업은 매칭된 수요기업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약내용대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며, 전담기관의 데이터 상품 또는 가공서비스 제공 결과 관리·감독에 최대한 협조한다.

2. 공급기업 지정 대상 및 제한 조건

- 공급기업에 참여하기 위한 제한은 없으며, 데이터 판매 또는 가공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정해진 심사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지정한다.
 - 판매기업은 원칙적으로 데이터를 직접 생산, 가공하여 데이터의 판매뿐 아니라 처분이 가능한 정당한 권원을 가진 기업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다.

- 가공기업은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의 인력 자원 한도 내에서 수요 기업과 매칭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하고, 재하청 등의 방법으로 수요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.

[표2] 공급기업 자격 요건

- ▶ 참여 가능 대상(기업규모 및 유형) : 대기업, 중소기업, 소상공인, 지자체, 공공기관, 대학 및 연구기관 등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자
- ▶ 참여 불가 대상 : 부정당기업 등록, 휴·폐업 기업, 단기연체 발생 기업, 채무불이행 중인 기업, 기업 신용평가 B등급 미만(7년 이상 기업)
- ※ 공급기업 등록 중 부정당기업 등록 시 등록일로 공급기업 자격이 박탈되며 데이터 바우처 포털에서 상품 또는 공급기업 정보 삭제

- 공급기업의 자격은 지정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. 단, 협약을 체결한 공급기업의 경우 해당 협약의 종료일까지 공급기업의 자격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.
- 타인의 데이터를 가공하여 데이터 판매를 희망하는 기업의 경우 원천데이터를 보유한 자로부터 해당 데이터의 처분에 대한 권리를 득한 경우에 한하여 판매기업으로 참여할 수 있다.
- 판매기업은 지정심사 신청 시 보유 데이터의 저작권·개인정보보호법·기타 현행법상 위반 여부 확인, 데이터 상품정보 및 가격 정책 등 전담기관이 요구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- 가공기업은 데이터 가공을 위한 자체 전문 인력 및 가공 SW 등을 보유하고 수요기업의 요구사항에 따라 데이터 가공서비스를 제공한다.
- 공급기업으로 지정된 후 지정 심사에 제출한 자료가 허위로 밝혀지거나, 제공하는 데이터의 저작권·개인정보보호법·기타 현행법 위반 등의 사실이 밝혀진 경우 전담기관은 해당 기업의 공급기업 자격을 정지 또는 해지할 수 있다.

- 수요기업 요구에 따라 가공하려는 데이터는 수요기업 보유, 공급기업 보유 또는 공개데이터 등 활용에 제한이 없으나, 가공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가공하는 경우 '구매바우처' 부문과 차별화한 가공서비스를 '사전협의서'에 명시하여 제시하여야 한다.
- 만약, 구매 바우처를 통해 제공 가능한 데이터를 가공 바우처로 전환하여 제공하는 경우 해당 협약은 해지될 수 있으며, 지급된 비용은 가공기업으로부터 환수될 수 있다.

3. 데이터 공급(판매·가공)기업 신청 및 지정심사

- 전담기관은 공급기업 지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모 및 지정 심사를 실시한다.
- 전담기관은 공급기업 지정 신청서류를 기반으로 공급기업 심사를 위한 자격 요건 검토 후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청 기업은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.

[표3] 공급기업 기본요건(적격성 검토) 기준

- ▶ 공급기업 적격성 검토 사항
 - 사업기간 7년 미만 기업 : 채무불이행·단기연체 없는 기업
 - 사업기간 7년 이상 기업 : 채무불이행·단기연체 없고, 신용등급 B 이상*인 기업
 - * 정부 및 지자체, 공공기관의 경우 기업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 불필요
 - 참여제한 조건(부정당사업체, 휴업·폐업 중인 기업, 세금체납 기업) 여부

- 전담기관은 공급기업의 기업 역량 및 참여 목적의 적합성, 데이터 판매 및 가공서비스 정책의 적정성, 공급기업 추진 전략의 우수성 등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공급기업을 평가하여 지정한다.
- ☞ 심사결과 공급기업 탈락 기업은 향후 재신청할 수 있으며, 재신청 시 이전 심사 탈락 이력으로 인한 별도 불이익은 없음, 다만 심사 탈락 사유가 고의로 허위 자료 제출 또는 허위 사실 기재인 경우 공급기업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
-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기업은 심사결과가 통보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1회에 한하여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다.

- 공급기업으로 지정된 이후 휴·폐업, 채무불이행, 부정당기업 등록 등의 문제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공문으로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.
 - 휴·폐업 변동이 발생한 공급기업은 변동 발생일로부터 즉시 자격의 효력이 중지(협약된 경우 해약 진행)된다.
 - 채무불이행, 부정당기업으로 등록된 공급기업은 해당 내역이 해지되는 날까지 수요기업과 신규 매칭 대상에서 제외한다.
- ☞ 부정당기업, 채무불이행 등록 내역이 해지된 기업은 신규지정 재신청 가능
 - 다만, 채무불이행 발생, 부정당기업으로 등록된 공급기업이 해당 사실 발생 이전에 수요기업과 협약하여 데이터 판매 또는 가공 서비스를 제공 중인 경우 협약 기간 내 성실하게 서비스를 제공한다.
 - 공급기업은 지정 후 대표자, 기업명 등 기업정보가 변경될 경우 기업정보 변동일로부터 최대 30일 이내 전담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전담기관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.
- 만일 자격 요건에 변동이 발생한 공급기업이 해당 내용을 전담기관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 전담기관은 위원회 검토를 통해 해당 공급기업의 지정 해지, 사업참여 제한 등 제재를 취할 수 있다.

4. 공급기업 정보, 가공서비스, 상품정보 등록

- 공급기업은 전담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기업 정보, 데이터 상품 및 가공서비스 정보를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.
- 공급기업이 공급기업 정보, 가공서비스 정보, 상품정보로 등록한 내용이 지정심사에 제출한 내용과 다르거나 허위인 경우 전담기관은 관련 정보 수정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
 - 전담기관은 공급기업 접수 시 제출한 서류와 데이터바우처 사업관리 시스템 내 입력사항이 다를 경우 해당 기업의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.
- ☞ 공급기업이 공급기업 정보, 가공서비스 정보, 상품정보를 허위로 노출한 것에 대한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전담기관은 해당 공급기업의 지정을 해지할 수 있음

5. 공급기업 정보, 가공서비스 및 상품정보 변경·추가

- 공급기업은 공급기업정보, 가공서비스 및 상품정보가 변경된 경우 관련 정보 변경신청 절차에 따라 상품 또는 서비스 정보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.
- 공급기업의 변경 사유가 미흡하거나 변경 내용 근거가 부족한 경우 변경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며 공급기업은 변경신청 내용을 보완하여 재신청할 수 있다.
- 단, 상품명과 가격 등 중요 정보는 변경이 불가하며, 수요기업 공모 기간에는 모든 정보의 변경이 불가하다.
- 판매기업이 데이터 상품 추가를 희망하는 경우 관련 상품추가 절차에 따라 상품추가 평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의 승인이 된 경우 신규 상품을 추가할 수 있다.
- 지정된 공급기업이 사업자 전환(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법인으로의 전환인 경우 또는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개인사업으로의 전환인 경우를 말한다)을 하는 경우, 지정 공급기업의 자격은 승계되지 않는다.
- 단, 기존 공급기업이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협약 건에 한하여 협약의 종료일까지 새로운 사업자가 기존 공급기업 자격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그 협약의 당사자인 수요기업은 해당 협약상 공급기업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.

6.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을 활용한 판매·가공기업 홍보 기준

- 공급기업은 데이터바우처 사업명, 사업로고 등을 활용하여 기업의 데이터 상품, 가공서비스의 온·오프라인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.

[표4] 공급기업의 데이터바우처 활용 홍보 가능 매체

- ▶ 온라인 매체(키워드 광고, 배너 광고, 영상 광고 및 자체 온라인 마케팅 채널 활용)
- ▶ 오프라인 매체(신문, 방송, 잡지 및 기타 전단지 등)

- 데이터바우처를 활용하여 홍보를 추진하는 기업은 홍보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- 홍보 콘텐츠 제작 시 데이터바우처 사업 명칭 및 로고, 사업전담기관 명칭 및 로고를 병기하여 제작하되 데이터 상품·가공서비스 주체인 공급기업과 전담기관이 혼동되지 않도록 제작하여야 한다.
 - 공급기업은 공급기업 데이터 상품 또는 가공서비스에 대한 과대·과장광고, 타 공급기업을 폄훼하는 비방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.
 - 공급기업은 수요기업이 해당 공급기업의 상품을 선정하는 경우 데이터바우처 선정에 유리한 것으로 홍보하거나, 공급기업의 데이터 바우처 선정 권한을 지닌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허위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.

- 관련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전담기관은 해당 공급기업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, 공급기업이 시정조치에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내용을 검토하여 사업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.

Ⅲ 데이터바우처 신청 · 선정 · 협약

1. 수요기업 신청 기본 자격 · 조건 및 사업 운영

- 데이터바우처는 서비스·제품 개발 및 고도화, 빅데이터 분석, AI 등 혁신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, 소상공인,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데이터 활용을 지원한다.
- 전담기관은 정해진 공모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데이터 활용을 희망하는 수요기업을 선정하여 수요기업 1개 기업당 지원금 한도 내에서 데이터바우처를 지원한다.

[표5] 데이터바우처 지원 제한 요건

- ▶ E-mail, Fax, 전화를 통한 홍보 목적의 단순 데이터 활용
- ▶ 목적성이 없는 호기심의 데이터 활용
- ▶ 타인의 지적재산권 침해를 목적으로 데이터 활용
- ▶ 당해연도에 동일한 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정부지원 사업을 지원 받은 경우

- 데이터바우처 신청을 위해 기업은 휴·폐업, 채무불이행 문제가 없어야 하며, 데이터바우처는 기업 1社 당 당해연도 1회 지원한다.
- 수요기업은 데이터바우처 신청 시 지원부문에 맞게 데이터 구매 또는 가공서비스를 신청하되, 전담기관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 타 지원부문 서비스를 일부 혼합하여 신청할 수 있다.
- 데이터바우처는 매칭 조건으로 지원하며 수요기업 규모별로 차등하여 민간부담금이 결정된다.
 - 데이터바우처 민간부담금은 수요기업이 데이터바우처를 활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며, 정부정책에 따라 민간부담금 비율은 변경될 수 있다.
 - 민간부담금은 현물과 현금으로 구성되며 지원기업 규모에 따라 민간부담금 구성 비율을 차등화할 수 있다.

- 민간부담금 중 현물은 수요기업의 사업계획에 따라 일부 또는 전체를 현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.
- 수요기업은 데이터바우처 신청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 상품 판매 기업 또는 가공서비스 공급기업과 협의를 통해 데이터를 활용한 사업 수행내용 및 추진 일정을 수립하고, 전담기관이 요구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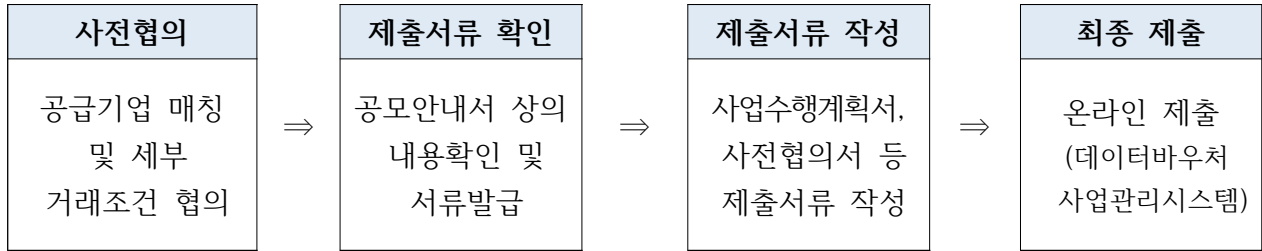
[표6] 수요기업-공급기업 매칭 제한

- ▶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* 관계인 경우
- * 공정거래법 제2조 제3호,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및 제2호

- 데이터바우처를 신청하는 기업 중 휴·폐업, 부정당사업자, 세금체납, 기업 신용 등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.
 - 또한 데이터바우처는 단년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수요기업이 신규 사업을 제안하여 수요기업 선정평가 결과 상위 20%에 해당하는 경우, 당해연도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.
- 데이터바우처를 지원받는 기업은 서비스·제품 개발,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전략 수립·시행 결과에 대한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.
- 데이터바우처는 시급성을 요하는 사회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 지원 트랙을 마련하여 사업자의 데이터 활용을 지원할 수 있다.
 - 이 경우 지원대상, 지원방법 및 조건, 지원 일정을 명시한 별도 계획 및 공모안내서를 수립하여 전담기관장의 승인 하에 시행한다.
- 데이터바우처는 특수 목적, 정책결정에 따라 별도 형식의 공모를 실시하여 데이터 활용을 지원할 수 있다.
 - 이 경우 지원대상, 지원부문, 방법, 조건, 일정을 명시한 별도 계획 및 공모안내서를 수립하여 전담기관장의 승인 하에 시행한다.
 - ☞ 지원부문 및 내용, 평가기준·방법, 사업 점검방법은 기존 방식과 다를 수 있으며, 변경된 사업 내용은 해당 공모안내서 및 협약서를 기준으로 추진

2. 데이터바우처 신청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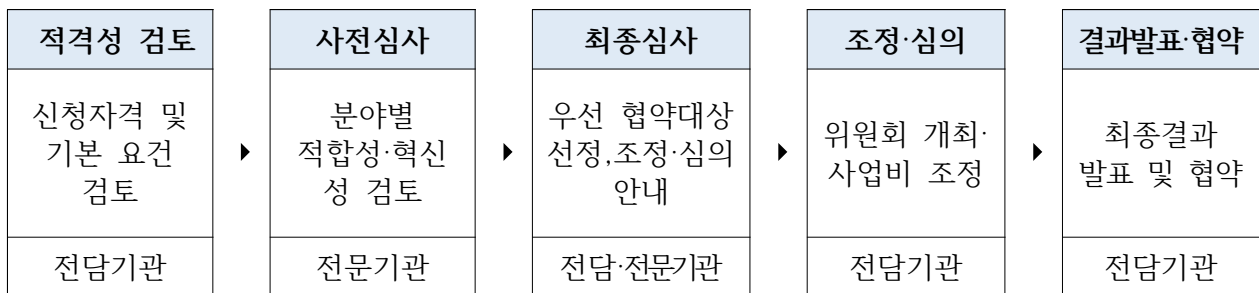
[표7] 데이터바우처 신청 절차



- 수요기업은 데이터바우처 신청을 위해 접수기간 내 공모안내서에 명시된 서류를 빠짐없이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 - ☞ 데이터바우처 신청기업은 공모안내서에 명시된 접수 방법에 따라 신청하며 반드시 접수 마감 시간을 준수하여야 함
- 제출마감 후 제출한 서류의 교체, 작성 내용의 수정을 불가능하며 전담기관은 기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.
 - 전담기관은 수요기업이 제출한 증빙자료가 평가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.

3. 데이터바우처 선정평가

[표8] 데이터바우처 선정평가 절차



- 전담기관은 평가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수요기업을 선정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비, 수요·공급기업 간 사전협약 사항 등을 조정할 수 있다.
 - 전담기관은 데이터바우처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기반으로 지원대상의 기본요건에 대한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심사 대상으로 결정한다.

- 전담기관은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의 협조를 통해 분야별 접수된 신청 기업의 지원 필요성 여부 확인을 위한 사전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.
- 전담기관은 과제 목표 타당성,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, 활용성 및 시장성, 지속성 및 성장성 등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.
- 전담기관은 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해 적격성 및 사전심사 내용을 반영하여 데이터바우처 우선 협약 대상을 선정하고 필요시 협약 전 사업비, 수요·공급기업 간 사전협의 사항 등을 비롯하여 신청 시 오류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.
- 전담기관은 최종 평가결과 60점 이상 득점한 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분류하고 협약 대상이 결격사유 검토 후 고득점 순으로 수요기업에 선정여부를 통보한다.
- 수요기업의 협약 포기 여부에 따라 전담기관은 후순위로 선정된 수요기업을 데이터바우처 지원기업으로 추가 선정할 수 있다.
- 선정평가 결과에 대해 방법 및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수요기업은 선정평가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1회에 한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 - 전담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접수 후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용 또는 반려 여부를 결정하여 안내한다.
 - ☞ 전담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검토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
 - 이의신청 내용이 관련 위원회 심의결과를 번복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전담기관은 그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한다.
 - 위원회 심의 결과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한 경우 전담기관은 해당 사업 내용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 - ☞ 재평가 결과에 대한 수요기업의 이의신청은 불가

IV 데이터바우처 사업 수행 · 관리

1. 데이터바우처 지원 협약

- 데이터바우처에 선정된 수요기업은 전담기관이 정한 바에 따라 해당 기간 내 온라인으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- 공급기업 또는 수요기업이 내부 사정에 따라 협약을 포기할 경우 전담기관이 정한 바에 따라 협약 포기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할 수 있다.
 - 전담기관은 협약을 포기한 수요기업을 대신하여 차순위 수요기업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.
 - 협약 대상인 공급기업이 협약을 포기하고 매칭된 수요기업이 공급기업 대체하여 협약 체결을 희망하는 경우 전담기관은 사업 일정, 대체 공급기업과 협의사항 등을 검토한 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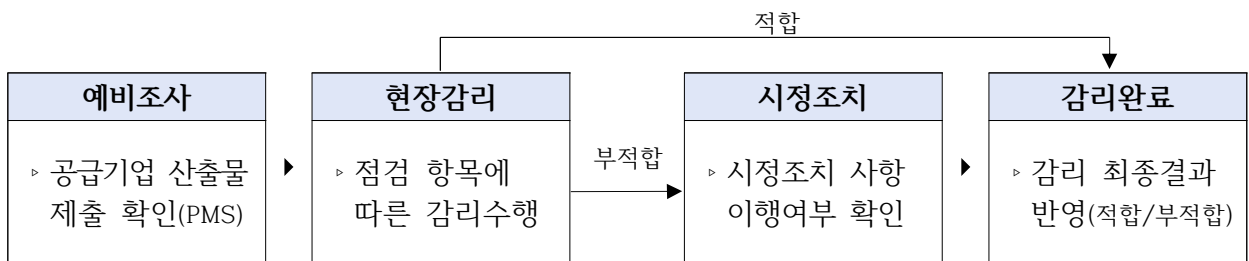
2. 공급기업 선금·잔금 지급

- 전담기관은 협약서에 명시된 지원금을 기준으로 공급기업에 선금, 잔금으로 나누어 데이터바우처 대금을 지급한다.
- 전담기관은 협약 후 선금지급을 위해 수요기업 및 공급기업으로부터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고 수요기업 및 공급기업은 전담기관이 정한 기한 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 -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서류 제출을 완료한 날로부터 전담기관은 제출서류의 오류 여부를 검토하고 30일 이내에 공급기업에 선금을 지급한다.
- 전담기관은 수요기업의 사업 결과평가 및 공급기업의 감리완료 이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잔금을 지급한다. 단, 제재 등 심의 위원회 의결사항에 따라 잔금지급을 보류하거나 기지급한 정부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.

- 전담기관은 사업일정, 정부정책을 고려하여 협약 체결 시 잔금지급 시기 및 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- 전담기관은 협약기간 및 협약종료 후 1년 이내 공급기업의 제공 데이터 품질, 협약 의무 불이행에 대해 검토하고, 검토결과에 따라 공급기업의 잔금지급 중단 또는 기존 지급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.
- ☞ 공급기업의 서비스 품질 및 협약 의무 불이행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검토
- 공급기업은 해당 처분의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다.

3. 데이터 제공(데이터 상품 또는 가공데이터) 및 검수

[표9] 데이터 검수 절차



- 협약 후 공급기업은 선금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수요기업과 협의하여 데이터 상품 제공 또는 데이터 가공 업무를 수행한다.
- 판매기업은 협약 시 수요기업과 협의하여 제출한 사전협의서에 명시된 데이터 범위, 전달 방법을 준수하여 데이터 상품의 공급을 추진한다.
 - 협약 이후 판매기업이 정당한 이유 없이 데이터 제공을 미루는 경우 수요기업은 전담기관에 관련 사실을 즉시 고지하여야 한다.
 - 이 경우 전담기관은 판매기업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판매기업은 전담기관의 요구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.
- 가공기업은 협약 시 수요기업과 협의하여 제출한 사전협의서에 명시된 데이터 가공 범위, 전달방법을 준수하여 데이터 가공 또는 데이터 상품 제공을 추진한다.

- 협약 이후 가공기업이 정당한 이유 없이 데이터 가공업무의 착수를 미루는 경우 수요기업은 전담기관에 관련 사실을 즉시 고지하여야 한다.
- 이 경우 전담기관은 가공기업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가공기업은 전담기관의 요구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.
- 공급기업은 제공 데이터 및 가공서비스에 대해 최소 6개월 이상의 유지보수 기간이 포함된 유지보수 계획을 수요기업과 협의,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전담기관은 공급기업이 협약된 내용으로 수요기업에 데이터 상품 제공 또는 데이터 가공 업무 수행 여부를 검수한다.
 - 공급기업은 전담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수에 응해야 하며 공급기업과 수요기업 간 임의로 변경한 내용은 검수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.
 - 전담기관은 정확한 검수를 위해 감리기관 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검수를 진행할 수 있다.
 - 공급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검수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수를 거부하는 경우 전담기관은 공급기업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기업은 즉시 응하여야 한다.
 - 검수 결과 데이터 상품 제공 또는 데이터 가공업무 수행 현황이 미흡한 경우 감리기관은 추가 검수를 실시할 수 있다.
- 공급기업이 전담기관의 시정조치 요구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전담기관은 해당 공급기업에 지급한 대금(정부지원금)의 반환, 협약의 해지, 부정당사업자 등록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4. 수요기업 현장 이행점검 및 교육

- 전담기관은 수요기업의 사업수행 내용을 확인하고 성실한 사업수행을 독려, 수요기업의 사업 추진 애로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 이행점검을 실시한다.

- 수요기업이 현장 이행점검 시 허위 증빙을 제출하는 경우 전담기관은 해당 수요기업에 협약해지, 정부지원금 환수,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.
- 전담기관은 수요기업의 현장 이행점검 시 사업완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 필요시 특별점검반을 구성하여 수요기업 및 공급기업을 방문하여 문제사항을 확인하고 지도할 수 있다.
- 전담기관은 현장 이행점검 결과 확인한 수요기업 문제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, 해당 수요기업은 정해진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시정조치 결과 또는 시정조치 계획을 회신하여야 한다.
- 전담기관은 효율적인 현장 이행점검 실시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.
- 전담기관은 수요기업의 데이터 활용 역량을 제고하고 혁신적인 사업성과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 활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 - 데이터 활용 교육은 의무 교육 또는 선택 교육으로 구분되며, 세부 교육 일정 및 내용은 전담기관이 별도로 공지하여 실시한다.

5. 수요기업 자부담(민간부담금) 이행점검

- 전담기관은 수요기업의 사업 추진 중 자부담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자부담 이행에 문제가 있는 수요기업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
 - 수요기업이 전담기관의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전담기관은 해당 내용을 검토하여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.
- 전담기관은 수요기업 사업결과평가 시 자부담 이행 여부를 수요기업에 안내하고 정해진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자부담이행을 점검할 수 있다.
- 전담기관은 수요기업 민간부담금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.

6. 협약의 변경 및 해지

- 사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협약은 임의로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없다. 다만, 아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급기업 또는 수요기업은 전담기관에 협약의 변경 또는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.

[표10] 협약의 변경 사유

- 수요기업의 사업 수행인력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
- 공급기업과 사전협약 내용의 변동
- 수요기업 및 공급기업의 기업 신상 변동(인수·합병 등)이 발생하는 경우

[표11] 협약의 해지 사유

- 수요기업 또는 공급기업의 수행인력 퇴사로 인하여 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
- 수요기업 또는 공급기업이 휴·폐업한 경우
- 수요기업이 관련 사업 수행을 포기하여 데이터 활용이 필요 없게 된 경우
-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협약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거래 내용 및 조건으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

- 수요기업은 협약 변경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담기관이 정한 바에 따라 협약의 변경 또는 해지를 신청하고, 전담기관은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승인여부 및 관련 절차를 통보한다.
- 전담기관은 수요기업의 협약 변경 또는 해지 신청을 검토한 결과 신청 사유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신청을 반려할 수 있으며, 수요기업은 동일 사유로 협약 변경 또는 해지를 재신청을 할 수 없다.
- 전담기관은 수요기업 또는 공급기업이 전담기관의 정당한 요구사항에 응하지 않는 경우 사업 수행 기간 중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 또한 해당 사유로 인해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당 기업의 귀책사유에 따라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.
 - 특히, 전담기관은 정부지원금의 부정수급,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한 경우 협약을 해지하고 정부지원금 환수, 5배 배상,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- ☞ 사업 수행 기간 중 특정 수요기업 또는 공급기업의 부정수급, 부정행위 등 신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에 대해 전담기관은 자체조사 실시 및 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대상 수요기업 또는 공급기업은 성실히 조사에 응해야 함
- ☞ 부정수급자에 대한 공표 심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으로 개최하여 진행

[표12] 기타 협약의 해지 사유

- ▶ 수요기업 또는 공급기업의 협약 위반 사유 발생 및 시정조치에 불응하는 경우
- ▶ 수요기업이 현장이행점검에 응하지 않는 경우
- ▶ 협약 이후 수요기업의 사업계획서, 사전협의를 및 기타 협약 시 제출서류의 허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
- ▶ 협약 이후 수요기업이 미지정 판매·가공기업과 매칭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
- ▶ 공급기업이 데이터 제공·데이터 가공 검수에 응하지 않는 경우
- ▶ 협약 이후 수요기업이 외부압력, 허위, 청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기업과 매칭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
- ▶ 공급기업이 수요기업에 정부지원금 일부 환급 등 부정수급 행위가 적발된 경우
- ▶ 수요기업이 사업 결과 평가에 응하지 않는 경우
- ▶ 수요기업이 별다른 사유 없이 자부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
- ▶ 기타 협약 이후 지원 부적격 기업 또는 매칭 제한 기업에 해당 사실이 확인된 경우

7. 수요기업의 공급기업 대체 조건 및 협약 절차

- 수요기업이 공급기업 대체가 필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전담기관이 정한 바에 따라 공급기업 대체를 신청할 수 있다.

[표13] 수요기업의 공급기업 대체 허용 조건

- ▶ 협약 대상 수요기업과 매칭된 공급기업이 협약을 거부하거나, 부정수급 문제로 협약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
- ▶ 매칭된 공급기업이 휴·폐업 하는 경우
- ▶ 매칭된 공급기업이 데이터 제공·가공 분야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
- ▶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
- ▶ 매칭된 공급기업의 부정수급 등 문제 발생으로 공급기업 자격이 중단되어 협약을 해지해야 하는 경우

- 수요기업이 공급기업 대체를 신청한 경우 전담기관은 수요기업의 잔여 사업기간 및 공급기업 대체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공급기업 대체 여부를 승인한다.

8. 수요기업 사업결과 평가

- 전담기관은 수요기업의 사업 종료 시 수요기업의 사업 추진 결과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, 평가일정 및 방법을 수요기업에 공지한다.
- 수요기업은 전담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, 전담기관은 수요기업이 제출한 사업결과평가 서류를 검토하여 문제가 있는 경우 보완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- 수요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담기관이 지정한 방법으로 정해진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전담기관은 해당 수요기업을 결과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.
- 전담기관은 정해진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수요기업의 사업결과를 평가하여 수요기업에 통보하고, 수요기업은 사업결과 평가 방법 및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1회에 한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 - 전담기관은 이의신청 접수 후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용 또는 반려 여부를 결정하여 안내한다.
- 전담기관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결과평가 결과가 미흡인 수요기업에 대해 정부지원금 환수,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9. 바우처 참여 기업 성과 제출

- 데이터바우처에 참여하는 수요기업, 공급기업은 데이터바우처 사업의 성과창출을 위해 전담기관이 시행하는 성과 제출 및 조사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.

V 기타사항

1. 데이터바우처 운영위원회

- 전담기관은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「운영조정위원회」, 「평가위원회」, 「심의위원회」, 「규정위원회」, 「부정심의위원회」를 운영할 수 있다.
- 데이터바우처 위원회의 위원 후보단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.

[표14] 위원회 위원 후보단 구성 조건

1. 기업체(기업·업종별 단체 및 민간협회 등을 포함한다) 종사자로서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 - 가.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전문분야 3년 이상 경력자
 - 나.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전문분야 5년 이상 경력자
 - 다.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전문분야 7년 이상 경력자
 - 라. 부장급 또는 이에 상당한 직급 이상인 자
 2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수·부교수·조교수
 3. 연구계
 - 가.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전문분야 3년 이상 경력자
 - 나.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전문분야 5년 이상 경력자
 - 다.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전문분야 7년 이상 경력자
 4.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
 5. 그 밖에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- * 단 사업의 특성,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후보단 자격 요건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.

- 위원회 운영 시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되는 위원은 위원회에서 제외하여야 한다. 다만, 자격 상실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위원회에 재참여 할 수 있다.
 - ☞ 전담기관은 위원이 불성실한 평가·심의를 하거나 협약 상대방 및 참여기관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위원의 자격을 박탈함과 동시에 해당 위원의 평가 및 심의 결과를 배제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재소집하여 실시할 수 있다.
 - ☞ 위원회를 재소집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에 실시할 수 있다.

[표15] 위원회 위원의 참여제한 조건

1.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, 전담기관 직원
2.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의 참여수행자
3.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의 협약기관(수요기업, 공급기업)에 소속된 자
4. 그 밖에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자
5. 기타 위원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

-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,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.
 -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해당 기술 분야의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 - 사안이 경미하거나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.
- 심의위원회와 부정심의위원회의 경우 전담기관은 공문을 통해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안의 의결 결과에 대해 해당기관에 통보한다.
- 운영조정위원회는 데이터 산업분야 기술, 정책 분야별 전문가 최소 4인이상 7인내외로 구성하여 운영하며,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.
- 평가위원회는 데이터 유통·활용·기술·비즈니스 분야 전문가, 법률·회계 전문가 등 5인 내외로 구성하여 운영한다.
- 심의위원회는 심의 내용의 성격에 맞게 법률 또는 회계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하여 5인 내외로 구성한다.
 - 선정평가 후 부문별 지원금 조정 심의의 경우 회계·데이터 비즈니스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.
 - 기타 사업 과정의 조정·의결이 필요한 심의를 진행할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.
- 운영조정위원회, 평가위원회, 심의위원회는 5인 위원 중 최소 과반 이상 참여한 경우 운영할 수 있다.

- 규정위원회는 정부지원 사업 및 법률자문 전문가 3인 내외로 구성하여 운영하며 규정 및 사업운영지침을 심의한다.
- 부정심의위원회는 데이터 유통·활용·기술·비즈니스 분야 전문가 등 5인 내외로 구성하여 운영한다.
 - 수요기업, 공급기업의 부정행위 조사 결과 및 제재 수준을 심의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.

2.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분쟁 처리

-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련 내용에 대해 전담기관에 즉시 고지하고 전담기관은 분쟁 내용을 확인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-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분쟁에 대한 조정을 희망할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조정을 진행한다.

3. 사업 이의제기 신청 절차

-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추진 방법 및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수요기업 또는 공급기업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 - 공급기업 지정, 수요기업 선정 및 각종 결과 평가, 점검결과 등의 경우 전담기관이 관련 내용을 공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1회에 한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 - 전담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접수 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용 또는 반려 여부를 결정하여 안내한다.
 - 필요에 따라 이의신청 내용을 상세하게 검토하기 위해 이의제기 신청자가 심의위원회에 참여하여 관련 내용을 소명할 수 있다.
 - 이의신청 내용이 관련 위원회 심의결과를 번복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전담기관은 그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한다.

4. 부정행위의 확인 및 처리방안

- e-클린신고센터 등을 통해 수요기업 또는 공급기업이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신청,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부정행위가 신고된 경우 전담기관은 자체조사, 부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행정 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.
-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평가를 통해 협약 대상인 수요기업 또는 공급기업의 부정행위로 인해 부정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가 결정된 경우 수요기업 또는 공급기업은 다음과 같이 처분된다.

[표16] 협약 전 부정수급 제재 대상별 처분 내용

- ▶ 협약 전 부정심의위원회 제재가 결정된 수요기업은 협약에서 배제하고 위원회 결정에 따라 향후 참여 제한 및 부정당사업자 등록, 형사고발 등 진행
- ▶ 협약 전 부정심의위원회 제재가 결정된 공급기업은 협약에서 배제하고 위원회 결정에 따라 공급기업 지정 해지, 부정당사업자 등록, 형사고발 등 진행

- 부정심의 대상 수요기업 또는 공급기업은 부정심의위원회 처분 결정 사항에 대해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이의신청 적정성은 부정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한다.
- 전담기관은 협약 전 공급기업이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협약에서 배제되는 경우 매칭된 수요기업에 공급기업 대체 매칭 방안을 제안하여 수요기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.
- 전담기관은 협약 후 공급기업이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제재를 받게 된 경우 해당 공급기업과 매칭된 수요기업의 공급기업 대체를 허용하여 수요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.

[표17] 협약 후 부정수급 제재 대상별 처분 내용

- ▶ 협약 후 부정심의위원회 제재가 결정된 수요기업은 협약을 해지하고 위원회 결정에 따라 부정당사업자 등록, 형사 고발, 정부지원금 환수 등 진행
- ▶ 협약 후 부정심의위원회 제재가 결정된 공급기업은 바우처를 통한 서비스 수임을 즉시 중지하고 위원회 결정에 따라 정부지원금 환수, 공급기업 지정 해지, 부정당사업자 등록, 형사고발 등 진행

5. 그 외 바우처 참여기업의 제재

[표18] 수요기업·공급기업 제재 절차

① 제재 사유 발생 → ② 필요 시 사전 조사 실시(전담기관) → ③ 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 → ④ 제재 결과 통보 → ⑤ 이의신청 접수 → ⑥ 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 → ⑦ 최종 제재 결과 통보 → ⑧ 제재 시행

- 공급기업 또는 수요기업에 대한 제재사항이 발생한 경우 전담기관은 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해당 기업의 제재 수준을 의결한다.
 - 대상 기업에 대한 제재 의결을 위해 전담기관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의위원회를 구성·운영한다.
 - 특히 제재 심의 시 적정한 법률적 판단이 이루어지도록 반드시 법률전문가를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포함시켜 구성한다.
- ☞ 제재 대상 기업과 관련이 있거나 친족 관계인 사람, 제재 대상 기업에 소속했던 이력이 있는 사람, 그 밖에 심의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사람은 위원회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제재 심의 안전에 대해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사전조사 실시 또는 제재 대상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.
 - 제재 결과 통보 후 제재 대상 기업은 10일 이내에 제재 결과에 대해 1회에 한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.
 - 심의위원회는 제재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한 후 공급·수요기업 제재 기준을 고려하여 참여제한 및 기간, 정부 지원금 환수, 경고 등의 제재 수준을 의결한다.
 - 전담기관은 제재 심의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며 문서에는 처분 내용, 담당자의 소속·성명, 연락처(전화번호, 팩스번호, 전자우편주소 등)를 기재하여야 한다.
 - 기타 제재 관련 사항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 세부 내용은 '방송통신발전기금법', '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·관리규정', '국가연구개발혁신법', '정보통신·방송연구개발 관리규정', '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'에 따른다.

[표19] 공급기업 제재 기준

사례구분	제재조치사유	경고	참여제한	정부지원금 환수
협약 거부 불이행	▸ 협약 대상 공급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수요기업과 협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	○	○	-
	▸ 정당한 사유없이 데이터 판매, 가공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	○	○	○
	▸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협약을 해지하는 경우	○	○	○
	▸ 사업수행 과정 상 수요기업의 정당한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등 공급기업 활동이 불성실한 경우	○	○	○
	▸ 수요기업과 잦은 분쟁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	○	○	○
	▸ 휴·폐업으로 인해 정상적인 데이터 판매, 가공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	-	○	○
	▸ 전담기관의 통보·승인 없이 임의로 데이터 제공·가공 범위 등 협약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	○	○	○
	▸ 정당한 사유없이 데이터 제공 또는 데이터 가공 일정을 지연하여 수요기업 사업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	○	○	○
	▸ 정보변동 등 전담기관에 변경사항에 대한 통보·변경신청 없이 사업을 추진한 경우	○	○	○
부정·청탁· 허위사실	▸ 거짓·허위사실·청탁·알선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공급기업으로 지정된 경우	-	○	○
	▸ 수요기업 모집 의뢰·알선에 대한 대가 지급, 다단계 방식의 수요기업 모집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요기업과 매칭한 경우	-	○	○
	▸ 매칭 대가로 수요기업에 정부지원금 또는 현물을 환급하는 경우 ※ 공급기업이 개발·보유한 데이터 분석·가공 등 S/W, 솔루션의 무상 이용 혜택 등은 해당 없음	-	○	○
	▸ 고의로 데이터 제공·가공 참여 인력을 부풀려 협약한 경우	-	○	○
	▸ 데이터 제공·가공 비용을 과다하게 산정하여 협약한 경우	-	○	○
	▸ 협약, 감리 등 진행 시 허위 서류 또는 증빙을 제출한 경우	-	○	○
보안	▸ 정당한 절차 없이 수요기업의 비즈니스 기밀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경우	-	○	○
	▸ 사업을 통해 습득한 수요기업 정보가 공급기업 관리 소홀로 누출된 경우	-	○	○
기타	▸ 제출서류 및 협약 내용 오기재로 선정평가 또는 사업추진에 영향을 주는 경우	○	○	-
	▸ 정당한 사유없이 전담기관 감리에 응하지 않는 경우	○	○	○
	▸ 정당한 사유없이 전담기관의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는 경우	○	○	○

[표20] 수요기업 제재 기준

사례구분	제재조치사유	경고	참여제한	정부지원금 환수
협약 불이행	▸ 정당한 사유없이 사전협약서에 명시된 공급기업과 협업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	○	○	○
	▸ 정당한 사유없이 민간부담금 이행, 데이터 활용 등 사업수행 계획서·협약서에 정의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	○	○	○
	▸ 정당한 사유없이 협약을 포기하거나 협약을 해지하는 경우	○	○	○
	▸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점검에 응하지 않는 경우	○	○	○
	▸ 정당한 사유없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	○	○	○
	▸ 정당한 사유없이 전담기관의 서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	○	○	○
	▸ 휴·폐업으로 인한 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	-	○	○
	▸ 사업참여 외 인력이 이행점검 담당자로 참여한 경우	○	○	○
부정·청탁·허위사실	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통해 수요기업으로 선정된 경우	-	○	○
	▸ 공급기업과 모의하여 정부지원금을 편취한 경우	-	○	○
	▸ 공급기업과 매칭을 대가로 물품을 요구한 경우	-	○	○
	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	-	○	○
	▸ 허위로 사업참여 인력을 기재한 경우	-	○	○
	▸ 고의로 결과보고서를 허위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	-	○	○
	▸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	○	○	○
	▸ 정당한 사유없이 전담기관의 이행점검에 응하지 않은 경우	○	○	○
사업 결과	▸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였으나 평가내용이 불량한 경우	○	-	-
	▸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였으나 사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	○	-	-
	▸ 사업을 불성실하게 수행한 경우	○	○	○
보안	▸ 공급기업 제공한 데이터를 협약 범위 외 남용한 경우	-	○	○
	▸ 공급기업이 제공한 데이터를 무단으로 대외 유출, 유통한 경우	-	○	○
기타	▸ 정당한 사유없이 전담기관의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는 경우	○	○	○

6. 데이터바우처 사업에 참여한 수요기업 홍보 기준

- 수요기업이 본사업을 통해 수행한 사업의 결과를 공개하거나 대외 발표를 추진할 경우 데이터바우처 지원을 통해 수행된 것임을 밝혀야 한다.
 - 수요기업은 홍보 콘텐츠 또는 발표자료 제작 시 데이터바우처 로고, 사업명칭, 전담기관 명칭 및 로고를 병기하여 제작하되 수요기업과 전담기관이 혼동되지 않도록 제작하여야 한다.

7. 기타

-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세부운영지침 및 업무지침을 따른다.